

대구대학교와 한국장애인복지공단의 학술연구 및 장애인복지사업관련 교류 협정서

대구대학교와 한국장애인복지공단(이하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복지사업의 발전과 전문 인력양성, 학술활동과 출소자 복지적 기술교류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하여 학·관 공동협력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상호 긴밀한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.

(제1조) 양 기관은 다음분야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연구개발 사업의 공동 수행
2. 출소자 복지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
3. 교육훈련 및 인력교류와 자원봉사활동의 추진
4. 학술정보 교류 및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
5. 연구기자재, 각종 시설물의 공동 활용 및 실험실습 지원
6. 기타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등

(제2조) 양 기관이 협력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는 공동의 소유로 하며, 그 내용을 발표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.

(제3조) 양 기관이 제1조의 협력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별도의 협의한 바에 따르고, 기타 사항은 해당 기관의 규정을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.

(제4조) 양 기관은 상호협력 또는 교류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기관의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(제5조) 이 협정은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, 어느 일방이 협정의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고, 매년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상기 협정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.

2007. 9. 18.



총 장 이 용 두

이 용 두



이사장 한 창 규

한 창 규